

차 용 증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차용증을 작성한다.

구분	갑 (채권자)	구분	을 (채무자)
성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소	
연 락 처		연 락 처	

제1조 (차용금액)

을은 갑으로부터 금_____원整을 차용하고, 갑은 이를 을에게 대여한다.

제2조 (차용일자)

위 금원의 차용일자는 20____년 ____월 ____일로 한다.

제3조 (변제기일)

을은 위 차용금 전액을 20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갑에게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변제한다.

제4조 (이자)

- ① 이자율은 연 _____%로 한다. (무이자인 경우 "무이자"라고 기재)
- ② 을은 매월 ____일에 이자를 갑에게 지급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원금 변제 시 이자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 ③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을이 제3조의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 (기한이익의 상실)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한 통지로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즉시 잔여 차용금 전액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2. 을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3. 을이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받은 경우

제7조 (비용부담)

이 차용증과 관련하여 채권 회수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소송비용, 공증비용 등)은 을이 부담한다.

제8조 (관할법원)

이 차용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차용증을 2통 작성하고, 갑과 을은 각 조항을 충분히 확인한 후 아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 ____ 년 ____ 월 ____ 일

갑 (채권자) : ○ ○ ○ (인/서명)

주소:

을 (채무자) : ○ ○ ○ (인/서명)

주소:

※ 본 서식은 일반적인 금전 차용 상황을 위한 표준 양식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기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이자로 봅니다. 고액 거래이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 공증 또는 내용증명 발송 등 추가 조치를 권장합니다.